

제 목 | 건설품질관리 중 교육훈련에 대한 문의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관련된 법적 교육훈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5조(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자는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품질관리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품질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기준·기간 및 내용은 별표3 제3호와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2010.12.13 본조문이 신설되어 품질관리자와 관련한 법적 교육훈련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접착제 사용 시 MSDS 작성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여부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접착제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다음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1%이상)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합니다.
1. 물리적 위험성(가. 폭발성 물질, 나. 인화성 가스, 다. 인화성 액체, 라. 인화성 고체, 마. 인화성 에어로졸, 바. 물반응성 물질, 사. 산화성 가스, 아. 산화성 액체, 자. 산화성 고체, 차. 고압가스, 카. 자기반응성 물질, 타. 자연발화성 액체, 파. 자연발화성 고체, 하. 자기발열성 물질, 거. 유기과산화물, 너. 금속부식성 물질)
 2. 건강 유해성(가. 급성 독성 물질,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라. 호흡기 과민성 물질, 마. 피부 과민성 물질, 바. 빌암성물질, 사.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아. 생식독성 물질, 자. 특정표적 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차.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카. 흡인 유해성 물질)
 3. 환경유해성(가.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따라서, 접착제에 대하여는 동 제품의 물리화학적성상과 구체적인 구성성분 및 이들의 유해위험성 등을 파악한 후, 위 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MSDS작성 및 경고표지부착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 목 | 정기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여부

착공신고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착공승인을 득함으로서 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 ⇒ 정기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여부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르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는 감리원(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실착공전 발주자(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및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승인과는 별개로 감리원의 확인 및 해당 허가, 인가, 승인기관의 장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심사결과 '적정' 할 경우에 한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정기안전점검 계획도 적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제 목 |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 있어 공사 현장과 별도의 장소에서 철골 제작이 이루어질 경우 그 제작과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제작된 철골은 자재비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대상이 되나,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경우 철골구조물을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위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고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증 작은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됩니다.

제 목 | 에어 그라인더 사용 시 커버사용 문제

현장에서는 여려 종류의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가 아닌 공기의 동력으로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라인더커버를 해체하고 사용해도 되는 작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그라인더 훨이 연마석, 칼날 등이 아닌 훨이 깨어져 비산될 시 타 훨에 비해 위험성이 적은 종이재질의(Sand paper wheel) 훨을 사용할 시에도 커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직경 5센티미터 이상인 연삭숫돌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연삭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장치인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연삭숫돌이 아닌 종이재질의 훨(Sand paper Wheel)을 설치한 연삭기에는 원칙적으로 덮개를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라인더 작업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이므로 훨의 파손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작업여건상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자의 정부보장사업 보상여부

건설현장에서 작업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던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부보장사업의 보상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보장사업의 보상금 청구권은 다른 수단에 의해서 구제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최종적인 구제조치를 목적으로 제정한 보상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현장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며, 그 보상액이 동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